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92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되었다.

*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 결과, 공동생활가정의 손익률 △2.3%

- 또한,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를 추가로 인상하였다.

* ('09년) 1,368개소 → ('13년) 368개소 → ('22년) 130개소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1,750원에서 84,240원(+2,490원)으로 인상된다.

-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 7,2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0만 5,44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원)

등급	비교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23년 수가	'24년 수가	'23년 수가	'24년 수가
1		81,750	84,240	68,780	71,010
2		75,840	78,150	63,820	65,890
3, 4, 5		71,620	73,800	58,830	60,740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자지원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증가액)	184,900	179,600	38,600	35,600	30,500	19,100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	81,750	16,350	84,240	16,848
2	75,840	15,168	78,150	15,630
3,4,5	71,620	14,324	73,800	14,760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1일,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	68,780	13,756	71,010	14,202
2	63,820	12,764	65,890	13,178
3,4,5	58,830	11,766	60,740	12,148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5,795	39,810	5,972
	2등급	35,760	5,364	36,850	5,528
	3등급	33,010	4,952	34,020	5,103
	4등급	31,510	4,727	32,470	4,871
	5등급	30,000	4,500	30,920	4,638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30,920	4,638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53,360	8,004
	2등급	47,960	7,194	49,420	7,413
	3등급	44,270	6,641	45,620	6,843
	4등급	42,770	6,416	44,070	6,611
	5등급	41,240	6,186	42,500	6,375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42,500	6,375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9,660	66,360	9,954
	2등급	59,660	8,949	61,480	9,222
	3등급	55,080	8,262	56,760	8,514
	4등급	53,580	8,037	55,210	8,282
	5등급	52,050	7,808	53,640	8,046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10,643	73,110	10,967
	2등급	65,720	9,858	67,720	10,158
	3등급	60,720	9,108	62,570	9,386
	4등급	59,190	8,879	61,000	9,150
	5등급	57,690	8,654	59,450	8,918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2	78,400	11,760
	2등급	70,480	10,572	72,630	10,895
	3등급	65,110	9,767	67,100	10,065
	4등급	63,600	9,540	65,540	9,831
	5등급	62,100	9,315	63,990	9,599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④ 단기보호

(단위 : 1일,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	63,250	9,488	70,500	10,575
2	58,570	8,786	65,280	9,792
3	54,110	8,117	60,310	9,047
4	52,680	7,902	58,720	8,808
5	51,240	7,686	57,110	8,567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7,670	7,151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	39,440	5,916	40,760	6,114
30분~60분 미만	49,460	7,419	51,110	7,667
60분 이상	59,500	8,925	61,490	9,224

붙임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목적)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4.27 제정, 2007.10.1. 시행 (제도시행 2008.7.1.)

- (대상) ①65세 이상 또는 ②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22년말 기준)

구분	내 용	기관 수
재가급여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21,334개소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6,150개소
계		27,484개소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 (인정자 및 이용자 현황) 인정자 101.9만 명, 이용자 86.1만 명

○ 전체 노인인구 938만 명 중 약 10.9%인 101.9만 명이 장기요양 인정

(단위: 명, ‘22년말 기준)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019,130	49,946	94,233	278,520	459,316	113,842	23,273
(100%)	(4.9)	(9.2)	(27.3)	(45.1)	(11.2)	(2.3)

- (등급 구성)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제 공 급 여	재가+시설		재가*			주·야간보호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복지용구(재가급여 이용 시)					

* 시설급여 예외적 허용 :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